

의안번호	2218077
의 퇴 인	염태영의원
회 답 일	2026.4.27.
추계번호	26B1894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제4호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4. “철도지하화사업”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 철도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일반철도 중 제4조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에서 고시된 노선을 지하화하거나 해당 노선의 선로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하는 사업을 말함	의무규정
2	안 제5조의2 신설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지원센터의 설치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음(제1항) 1. 국토연구원 2. 한국교통연구원 3. 그 밖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재량규정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제2항) 1. 지방자치단체의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 구상, 계획 수립 등의 자문 및 지원 2.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기본계획 착수를 위한 타당성 검토 3.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 4.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그 밖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의무규정
3	안 제9조 (사업시행자)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함(제1항) 1.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출자받거나 출자받기로 예정된 자 2.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	의무규정
		시·도지사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안 제13조 (비용부담의 원칙)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 시행자(제9조제2항 ¹⁾)에 따른 공동 사업시행자를 포 합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함(제1항)	의무규정
5	안 제13조의2 신설 (철도지하화특별회계의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4항에 따른 철도지하화사 업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지하화특별 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음(제1 항)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회계의 재원 확보를 위해 철도 지하화통합개발로 인해 용도지역의 변경, 개발사업 의 증가 등이 예상되는 지역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영향구역(이하 “영향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2항)	의무규정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함(제3항) 1. 영향구역 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2. 영향구역 내에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 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 담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3. 영향구역 내에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 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중 조 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4.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정하는 재 원29	의무규정
6	안 제15조제3항 신설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의 발행)	국가철도공단 ^이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시행 자로 지정된 경우, 국가철도공단은 철도부지개발사 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 상환에 사용할 수 있음(제3항 신설)	재량규정

1) 안 제9조(사업시행자)

② 시·도지사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과 사전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Ⅱ.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근거규정
1	안 제2조제4호(정의)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5조의2 신설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지원센터의 설치 등)	
3	안 제9조(사업시행자)	
4	안 제13조(비용부담의 원칙)	
5	안 제13조의2 신설 (철도지하화특별회계의 설치 등)	
6	안 제15조제3항 신설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의 발행)	

2. 상세 사유

- (안 제2조제4호) 개정안은 철도지하화사업에 지하화 노선의 선로 상부의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이를 시행하는 경우 인공지반의 조성, 선로 상부의 구조물 설치 및 상부공간 개발 등에 따른 사업비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
 - 그런데 개정안에 따른 인공지반 조성이 필요한 대상 노선, 사업구간, 면적, 구조형식 및 시공방식, 상부개발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인공지반 조성비는 해당 지반의 여건과 철도 운행여부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현시점에 추가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안 제5조의2 신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센터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구상과 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기본계획 타당성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사업비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런데 개정안에 따른 지원센터로 지정하게 될 센터의 수, 전담조직 설치 여부, 인력규모, 사업내용 등이 불확정적이고, 해당 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위탁사업의 범위와 재정지원 기준이 구체화되지 않아 현시점에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안 제9조 및 안 13조제1항) 개정안은 국가철도공단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시행자 범위에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을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들에게 비용 부담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비용을 부담할 수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런데 개정안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사업시행자로서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의 비용부담 수준은 해당 사업 대상 노선, 사업구간, 총사업비, 공동 사업시행자간 비용 분담 비율, 재원주달방식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현시점에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안 제13조의2 신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지하화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회계 재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하고 있어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 확보를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을 특별회계로 전입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런데 개정안은 철도지하화특별회계의 설치 여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어,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특별회계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 여부 및 규모가 불확정적이므로 현시점에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안 제15조제3항 신설) 개정안은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철도부지개발사업 수익을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현행법²⁾에 따라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매각대금이 발생한 당해연도에는 교통시설특별회계 철도계정으로 귀속될 수 있는 수입이 국가철도공단의 채권상환에 우선 사용될 수 있어 국가 세입이 감소될 수 있음
 - 그런데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노선의 수익성, 채권 발행규모와 상환계획, 국유재산 매각 여부 및 매각대금 규모 등이 불확정적이므로 세입감소 발생 여부 및 규모를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5조(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철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을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라 매각한 대금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